



보도시점 2025. 3. 6.(목) 15:30 배포 2025. 3. 5.(수) 18:30

◇ 정부,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총력 대응 - 특별단속 실시, 수사 역량 강화 등 대응방안 논의-
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, 민생범죄 점검회의 주재
“민생범죄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, 사회 불안 해소할 것”

① 「마약류 대응 강화방안」

△ 범정부 특별단속 △온라인 수사팀 신설 △신종 마약 발견 즉시 통제물질 지정

② 「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방안」

△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△번호 변작 중계기 유통 차단 △상호금융 범죄 대응 인프라 강화

③ 「불법사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추진과제」

△ 저신용층 제도권금융 공급 확대 △ 불법추심대응·소송지원 등 채무자보호 강화

④ 「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」

△ 범죄 발생 감소 및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인식 개선 △ 플랫폼 관리 강화

-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월 6일(14:00) 경찰청을 방문해 민생범죄 점검회의*를 주재했다.

* 권한대행(주재), 국조실 과기정통부, 행안부, 여가부, 방통위 금융위, 식약처, 대검찰청, 경찰청

- 이날 회의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악성 민생범죄가 심각함에 따라 정부가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대책을 점검하고, 수사역량 강화 등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으며,
 - 주요 민생범죄인 「마약·보이스피싱·불법사금융·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」에 대해 논의했다.
- 최 권한대행은 “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는 정부에 있고, 국민께서 안심하고 안전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대책을 강화해 나갈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- 아울러 “관계부처에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 하여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”을 당부했다.

- 한편, 최 권한대행은 회의 전,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하여 전국 112 신고 현황, 경찰 치안상황관리 체계 등을 보고받고 근무자들을 격려하며, “112를 통해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에 집중해, 민생범죄 신고에 빈틈 없이 대응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① 마약류 대응 강화방안

- 정부는 마약류로 인한 일상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(검찰경찰, 식약처) 대응상황 및 올해 중점 추진계획*을 점검하였다.
 - *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('25~'29)에 따른 '25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 주요 내용
-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23,022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(27,611명) 대비 약 16% 감소하였으나, 10~30대 마약류 사범이 차지하는 비중은 60%를 넘어섰다.
- 특히, 젊은층을 중심으로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, 펜타닐·합성대마 등 중독성과 부작용이 심한 합성마약 유통·투약 위험성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.
- 이에,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수사·단속부터 치료·재활·예방에 이르기까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

1.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현장 단속 확대

- (**특별단속**) 정부는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 단속(상·하반기 각 1~2개월)을 추진한다.
 - 경찰청·대검찰청·해양경찰청·관세청·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하여,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통업소, 외국인 밀집시설, 공·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.
- (**비대면 유통 차단**)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'다크웹 수사팀'을 '온라인 수사팀'으로 개편(3월)하여 텔레그램 등 SNS,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.
 - 대검찰청은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·증거분석장비(Nuix) 등 첨단 수사장비를 도입하고,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신속히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(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)개선을 추진한다.

- 경찰청은 위장수사 제도 도입을 위해 법률·범죄수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 중이며, 해외 입법례·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약 수사 특성에 맞는 제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.
- (국제공조·협력)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·베트남·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하여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하고,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'마약류퇴치국제협력 회의(ADLOMICO)'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하여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한다.
- 경찰청도 4월 美 DEA(마약단속청)와 함께 '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'를 공동 개최하여, 미국 및 아시아 지역 20여개국 수사기관과 정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, 다국적 마약 밀수조직 해체를 위해 미주·유럽 등 주요 마약 유입국에 대해 인터폴 협동 공조작전을 추진할 계획이다.

2. 합성마약에 대한 대응 강화

- (단속 강화) 대검찰청은 해외에서 원료물질을 유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일이 없도록 관세청·국정원과 협력하여 마약제조 공범·원료물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또한, 합성마약의 장기간 사용여부를 감정하기 위해, 합성대마 등에 대한 모발분석법을 개발하여, 합성마약 사용자를 적발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다.
- (선제적 관리체계 구축) 식약처는 신종 합성마약이 국내에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종 합성마약에 대한 정보 취득 즉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관리한다.
 - * 현재의 임시마약류 구분(1군/2군) 및 재지정기한(3년) 폐지
- 또한,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합성마약은 수요 예측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공급되도록 제조·수입 배정량을 통제(식약처 제제부터 시행)하고,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·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동으로 점검·단속을 연중 지속 실시한다.
- 합성마약에 대한 중독예방 및 재활을 위해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고, 합성마약을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에 대한 전문 재활프로그램을 개발·운영한다.

3. 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

- (안전관리 강화) 식약처는 환자가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·투약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.
 - 우선, 의사가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자동 확인할 수 있는 성분을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ADHD 치료제·식욕억제제 등으로 확대한다.
 - 또한 '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활용 시스템'을 구축(12월)하여,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과 공공정보(주민등록, 출입국 정보 등)를 연계·분석함으로써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·유통을 사전에 예측·차단한다.
- (정보제공 확대) 아울러 환자가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'마약류안전정보도우미' 앱을 설치하여 개별적으로 검색해야 했으나,
 - '국민비서 알림서비스'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(12월)이다.

4.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및 예방관리 강화

- (중독자 사회재활) 식약처는 올해 마약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 관리하는 '한걸음 프로젝트'를 실시한다.
 - 전국 함께한걸음센터에서 방문상담을 실시(7월~)하여 마약류 중독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조기 발굴하는 한편, 1342에서 발굴된 관리대상은 중독수준 등에 따라 전문 재활기관으로 적시 연계한다.
 - 또한, 예방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약류 재활상담사·예방교육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하고, 전문 상담사, 보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재활 종료 후에도 단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사후관리한다.
- (예방 교육 및 홍보) 아울러, 식약처는 마약류 인식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.
 - 대학생 등 대상별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(~7월)하고, 대학교 내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(20개 대학)하여 대학생·유학생의 자발적인 예방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(3월~)이다.
 - 또한, 세계 마약퇴치의 날(6.26)을 전후로 범정부적인 마약류 예방·퇴치 주간을 운영하여 공모전·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.

②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

-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회성 편취였던 과거와 달리 휴대폰에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, 검찰·금감원 관계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립시킨 후 장기간에 걸쳐 ‘자금 전수조사’ 명목으로 전 재산 편취하는 치밀한 수법으로 나타났다.
 - 이러한 수법 변화는 피해규모의 증가로 이어졌으며, ‘24년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20,839건, 피해액은 8,545억에 달했다.
-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전된 디지털 환경의 속에 빠르게 진화하고, 이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「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」을 논의했다.

1. 자금세탁조직 집중수사 체계 구축, 국제공조 강화

- (특별단속) 먼저,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및 대포폰·통장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.
 -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하여, 개별 사건에 산재되어 있던 전국 피싱 사건의 데이터를 집적해 범죄조직과의 연결고리를 추적, 해외에 거점을 두고 첨조직 형태로 움직이는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.
 - 「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(동부지검, '22.7月~)」도 범정부적 수사·단속역량을 모아 주요 범죄조직 및 조직원에 대한 집중 수사를 이어간다.
- (국제공조 강화) 중국·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하여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 인터폴 작전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 보이스피싱 공조 수사 역량을 총 결집한다

2. 통신수단을 악용한 범죄 접근 시도 차단

- (불법스팸 차단) 작년 URL을 삽입한 문자 발송으로 스미싱을 유발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자 방통위는 대량문자발송 업체에 대한 긴급 실태점검('24.6~7月) 실시하고,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,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「불법스팸 근절 종합대책('24.11월)」을 수립하였다.
 - 그 결과 최근 불법스팸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'24.6월(4,747만건) 대비 84% 감소('25.1月, 781만건)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.

- 앞으로도 △ 불법스팸을 방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△ 불법스팸 범죄수익 몰수 △ 전송자격인증제 법제화 △ 피싱 URL 포함 문자를 사전 차단하는 X-ray 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등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법·제도 마련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.
- (대포폰·번호 변작 차단) 과기정통부는 대포폰을 차단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본인확인을 위한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, 법인 다회선 가입 기준을 강화*하여 법인 명의로의 우회 개통을 막는다.
 - * '법인 설립 기간, 부정이용 이력' 등을 반영한 통신사 공통 기준 마련
- 또 다른 대포폰 확보 수단인 '내구제 대출*' 불법 온라인 광고를 신속 삭제하고,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(인터넷·해외번호<070·001> → 국내번호<010>)의 제조·수입·판매 등 국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.
 - * 온라인 광고로 저신용자를 유인, 대출희망자 명의 휴대폰 개통양도를 조건으로 소액 지급
- (민·관 협력 보이스피싱 대응) 정부가 보유한 범죄 데이터를 통신사에게 제공하여 AI 기술을 활용한 피싱 대응 서비스 출시를 지원한다.

3. 금융권, 범죄 피해 발생 최전선에서 철통 방어

- 금융권은 피해자가 범죄단체에 피해금을 전달하기 전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최후 방어선으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.
- (안심 차단 서비스) 금융 이용자의 선택으로 사전에 비대면 대출을 차단하는 '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('24.8月)'는 시행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입자가 31만명('25.2月 기준)을 돌파했으며, 60대 이상 가입자가 53.9%를 차지했다.
 - 올해에는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대리인(가족)의 신청이 가능토록 채널을 확대하고, 대상을 비대면 계좌개설과 오픈뱅킹까지 넓혀 안전장치를 확충한다.
- (문진제도 실질화)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의 문진 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, 이를 바탕으로 '업무 방법서'를 마련하여, 고액 인출·대출 실행·적금 해지 등 거래 시 창구에서 파악된 의심 정황을 고객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를 안내한다.

- (본인확인조치 강화) 일정규모 이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·대부업체도 「통신사기피해환급법」상 본인확인조치 대상인 ‘금융회사’에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한다.
- (상호금융 인프라 개선) 지역 경제와 밀접한 상호금융도 피싱 범죄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하였다. 중앙회를 중심으로 이상거래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하고,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하는 등 범죄 대응을 위한 직접적인 인프라를 확충한다.
 - 은행권에 이어 도입한 ‘비대면 금융사고 자율배상책임제도’에 따라 금융회사의 사고예방 노력 정도를 감안한 배상을 통해 피해자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.

4. 신고 편의 제공, 취약층 맞춤형 홍보

- (신고편의)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^{*}는 '23.9월 개소한 이후 1년 5개월 동안 약 38만 건(일 약 1,095건, '25.2월 기준)에 대한 상담을 처리하였으며, 센터로 제보된 피싱 이용 전화번호 중 약 4만 건에 대해 이용 중지를 요청했다.
 - * 수사·통신·금융 분야 원스톱 신고 대응 서비스 제공, 경찰·금감원·KISA 등 합동 대응
- '24.10월부터는 오후 10시까지 상담 시간을 확대(기준 09:00~18:00) 운영하여 국민 편의를 높였으며, 올해는 시스템 고도화로 전화번호 차단에 소요되는 시간(기준 1일 → 개선 10분)을 획기적으로 줄일 계획이다. 또한 신고 내용을 분석, 신종수법 등장 시 대국민 예·경보 문자를 발송한다.
- 과기정통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 발생 시, 신속하게 사후 조치할 수 있도록 민·관 통합 「원스톱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」를 개발·제공한다.
 - * (기준) 소액결제 차단·명의도용 확인 등 단계별로 개별 접속인증 → (개선) 통합 접속인증 조치
- (맞춤형 홍보) 금융권에서는 피해 특성 분석을 통해 연령별 맞춤형 교육 자료를 공동으로 제작한다. 보이스피싱 범죄는 누구나 표적이 될 수 있는 만큼 최근 타겟이 되고 있는 중장령층을 포함하여, 전 연령대에 대해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.

③ 불법사금융 근절 과제 추진

- (정책서민금융 공급)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생계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. 이를 위해 '25년도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* 수준으로 확대하고,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.

* 연도별 정책서민금융 공급(조원) : ('22) 9.7 ('23) 10.6 ('24) 9.3 ('25^{계획}) 11.8

- (불법광고·정보 차단 등) 온라인 불법사금융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온라인플랫폼사 등 민·관 협조를 강화하고,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정보의 불법사금융업자 노출 방지를 위해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한다.
- (소송 지원) 채무자가 추심인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을 선임*할 수 있도록 하고, 대부업법 개정 ('25.7월)으로 反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채무자 대리인을 통한 대출계약 무효화소송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.

* [채무자대리인 선임방법] ① (전화)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☎1332)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② (온라인) 금융감독원 "불법사금융 지킴이" 홈페이지 신청

- (단속수사 및 피해자 보호) 경찰은 '22.11월부터 불법사금융 범죄를 특별단속 중으로 (~'25.10.31), 전국 시·도 경찰청 및 경찰서에 신설('24.11월)된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바탕으로 수사속도를 제고, 악질 추심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.
 - 피해자가 경찰에 전화 상담(☎112·182 등)시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, 신고시 피의자에 대한 구두·서면 경고, 피해자 안전조치(스마트 워치 설치, 임시숙소 제공) 등 지원제도를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.

- (홍보 강화)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쉽게 안내하기 위해 “불법사금융 대응 유관기관 합동 집중 홍보기간”*을 3월까지 운영한다.

* 일선 지방자치단체 등을 활용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·현장 홍보 등 다각적인 홍보 강화 및 금융기관 창구, 대중교통수단, SNS 등 가용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 확대실시

④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

- 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「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성과를 정리하는 한편,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.
 - 지난해 11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, △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△플랫폼 책임성 제고 △신속한 피해자 보호 △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를 역점 추진키로 한 바 있다.
- 그간의 주요 이행 실적을 살펴보면,
 - (처벌·수사) ①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범죄까지 확대하고, ②성적 허위영상물을 통한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·추징하는 규정을 신설(이상 성폭력처벌법 개정)하였다.
 - (플랫폼 관리)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①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를 부과하여 이행토록 하였고, 행정 업무 소통을 위한 ②별도 핫라인을 추가 개설하였다.
 - (피해자 보호) 피해자가 보다 쉽게 피해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 ①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기관 신고전화를 '1366'으로 일원화해 시범 운영 중이며, 과기부·방통위에 ②딥페이크 피해예방을 위한 시책 마련을 의무화(정보통신망법 개정) 하였다.
 -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③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(AI기본법 제정), ④AI 안전연구소를 개소하여 AI위험 관리도 강화하였으며, ⑤딥페이크 보안기술을 특히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민간기업이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 - (예방교육) ①학교와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 예방 교육을 확대 추진 중이며, ②별도 교수학습자료를 개발·배포하고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도 실시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. 학생·학부모·교사 등 ③대상별 예방 교육 영상도 배포 중에 있다.

- 이를 통하여, 월별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가 지난해 9월 395건에서 12월 108건으로 72.7% 감소하는 등 범죄 발생이 줄어들었다.
 - 또한, 청소년 조사 결과('24.11, 중고생 2,145명 대상) 응답자 89%가 성적 허위 영상물이 범죄라고 답하는 등 인식 역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.
 - 특히, 최근에는 텔레그램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'자경단' 조직원 등 54명을 검거한 바 있다.
- 앞으로도 남은 이행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가 다시는 빨붙이지 못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 - 선진 수사기법 도입*과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수사역량을 확충하고,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정비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한다.
 - * 사법협조자 형벌감면, 독립몰수제 도입, 인터넷 모니터링 등
 - 플랫폼의 불법영상물 24시간 삭제시한 명시나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한 플랫폼의 제재조치 의무화 등 플랫폼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간다.
 - 특히, 대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'에브리타임' 앱 내에서의 성희롱, 혐오표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협의해 갈 계획이다.
 - 워터마크 변형·삭제를 통한 불법행위 처벌과 모니터링 및 상담 역량 강화 등 피해자 보호 대책도 충실히 추진하고,
 - 대학의 관련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의훈련을 실시하는 등 예방 교육과 홍보도 전방위적으로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.

※ 별첨. 안건별 주요 대책 내용 (요약)

「민생범죄 점검회의」 안건별 주요 대책 내용

	마약	보이스피싱	불법사금용	딥페이크
수사·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특별단속 실시(연2회)^{25.4~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유통시설, 공항만 외국인 밀집시설 등 ▲ 현지 공조수사 확대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태국, 베트남, 말레이시아 ▲ 비대면 범죄 전담 수사팀 보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원래인 수사팀(경찰)^{25.3} * 원래인 마약유통 수사팀(경찰 수원대구)^{25.下} ▲ 합성마약 단속 강화^{계속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원료물질 등 미약 제조사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특별단속 실시(3~10월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금세탁조직 및 범죄수단 집중 수사 ▲ 국제 사법공조 강화^{계속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△중국 공안 협력, 현지 콜센터 단속 * △인터넷 공조작전 참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특별단속 추진(~10.31) ▲ 전담 수사팀 신설^{24.12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국 경찰청·서 ▲ 사건처리기준 정비^{25.7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법정형 상향에 따른 개정 ▲ 불사금신고센터 접수 건 경찰 신속 수사의뢰^{계속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특별단속 지속(~3.31) ▲ 국제 사법공조 강화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등 ▲ 사건처리기준 정비^{25.3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원칙적 구속수사, 엄정 구형 등
법·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사법협조자 형별감면, 범죄 이용계좌 자급정지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마약거래방지법) ▲ 투약이력 확인 성분 확대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ADHD 치료제, 식욕억제제 등 (의료단체와 협의 예정) ▲ 미성년자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 마련^{25.12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) ▲ 신종 마약 발견시 통제물질 신속 자정공고(마약류관리법)^{25.下} ▲ 의료용 합성마약 제조수입 배정량 통제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식욕억제제부터 시행 ▲ 위장수사 도입(마약류관리법)^{25.下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상호금융 범죄 대응력 강화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시스템 인프라 개선, 문진제 실태 점검 등 ▲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식 시스템 도입^{25.下} ▲ 법인 디비선 기업기준 강화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, '설립 기간, 불법 이력 등 검증' ▲ 변작 중계기 유통 금지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전기통신사업법) ▲ '내구제 대출' 불법광고차단^{25.上} ▲ 비대면 계좌개설·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^{25.上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불법금융광고 플랫폼 자체 제재기준 약관반영 의무화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정보통신망법 과방위 계류 중) ▲ 처벌형량 상향^{25.7} (대부업법) ▲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→원리금 무효화 / 일반 불법 대부계약→이자무효화^{25.7} (대부업법) ▲ 불사금(미등록대부, 불법차원추심) 이용된 번호 차단^{25.7} (대부업법) ▲ 온라인 대부중개업자 등록시 개인정보유출 방지체계 점검^{25.7} (대부업법) ▲ 정책시민금융 공급 확대^{11.8.조례}^{25.上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인터넷 감청 △사법협조자 형별감면 등 수사기법 도입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성폭력처벌법 등 법사위 계류 중) ▲ 성범죄물 게재자 제재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정보통신망법 과방위 계류 중) ▲ 사업자 24시간 내 삭제 명령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방통위 시행령) ▲ 先사업자 차단 후 심의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전기통신사업법 과방위 계류 중) ▲ 불법행위 목적 워터마크 변형·삭제 처벌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정보통신망법 미발의)
피해자보호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중독관리 대상 조기발굴^{25.7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한결음센터(17개)에서 방문상담 실시 ▲ 재활 후 주거적 사후관리^{25.7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전문 상담사, 보건소 등 ▲ 전문인력 양성(예방재활 300명)^{계속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민관협력 사업 지원²⁶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산행銀 300억 기금 조성 △긴급생활비 △법률심리 상담 지원 ▲ 피해 의심자 안전 조치 원스톱 서비스 제공^{25.下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한분의 인증으로 △소액결제 차단 △명의도용 확인 등 조치 해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피해자 상담시 경찰 즉시 신고→안전조치 및 피해자 경고^{24.11} ▲ 채무자대리인 선임 후 채무자 직접추심시 형벌^{25.上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채권추심법 미발의) ▲ 채무자대리인 선임 범위 확대^{25.7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추심인 연락처 몰라도 가능 ▲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^{24.2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상담·모니터링 역량 강화^{계속} ▲ 피해 상담전화 1366 일원화^{25.4} ▲ 피해지원 통합매뉴얼 발간^{25.6} ▲ 성범죄물 탐지·삭제지원 자동화 등 기술개발^{계속}
교육·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(15%)^{계속} ▲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^{25.7} ▲ 마약류 예방·퇴치 주간 운영(6.26 전후)^{25.6} ▲ 예방 서포터즈 구성(20개 대학)^{25.3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대국민 예경보 문자 발송^{분기별} ▲ 금융권 공동 교육자료 제작·배포^{25.下} ▲ 취약층 방문 교육 확대^{계속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복지관, 경로당, 문화센터 등 ▲ 범부처 합동 홍보^{계속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홍보채널D 공유 → 송출빈도 상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112(182) 표준안내 매뉴얼 운영^{24.11} ▲ '불법사금융 지킴이' 홍보 사이트 운영(금감원)^{24.12} ▲ 불법사금융 대응 집중 홍보기간^{25.3}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▲ 대응매뉴얼 배포^{25.3}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학생·학부모·교사용 별도 제작 ▲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^{계속} ▲ 대학 전담인력 교육^{계속} 및 모의훈련^{25.7} ▲ 홍보 캠페인 지속 실시^{계속}

□ 마약류 대책 협의회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이규배 (044-200-2338)
		담당자	사무관	김기은 (044-200-2889)
	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정책과	책임자	과 장	정현철 (043-719-2808)
		담당자	사무관	이겨레 (043-719-2802)
	대검찰청 마약과	책임자	과 장	이태순 (02-3480-2290)
		담당자	사무관	이병록 (02-3480-2292)
	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안찬수 (02-3150-0141)
		담당자	계 장	길민성 (02-3150-2171)

□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성훈 (044-200-2082)
		담당자	경감	강주이 (044-200-2094)
	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	책임자	과 장	심주섭 (044-202-6650)
		담당자	사무관	이석재 (044-202-6651)
	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	책임자	과 장	이경수 (044-205-3941)
		담당자	사무관	오정열 (044-205-3952)
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동현 (044-201-1751)
		담당자	사무관	전인수 (044-201-1756)
	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	황준성 (044-200-5420)
		담당자	사무관	박자현 (044-200-5431)
	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	책임자	과 장	고남현 (02-2110-1520)
		담당자	사무관	이명심 (02-2110-1522)
	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	책임자	과 장	이진호 (02-2100-29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은지 (02-2100-2974)
	대검찰청 조직범죄과	책임자	과 장	최재만 (02-3480-2280)
		담당자	계장	김수정 (02-3480-2284)
	경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과	책임자	과 장	안찬수 (02-3150-0141)
		담당자	계장	백의형 (02-3150-2782)
	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	책임자	과 장	김용진 (042-481-4190)
		담당자	사무관	이원미 (042-481-4155)
	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	책임자	국장	정재승 (02-3145-8150)
		담당자	팀장	김태근 (02-3145-8130)
	한국인터넷진흥원 국민피해대응단	책임자	단장	이동연 (02-405-6640)
		담당자	팀장	안정은 (061-820-1415)
		담당자	팀장	석지희 (02-405-6326)

□ 불법사금융 척결 TF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정태호 (044-200-2190)
		담당자	사무관	전지원 (044-200-2187)
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장	전수한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록 (02-2100-2513)
	대검찰청 형사3과	책임자	과장	윤원일 (02-3480-2853)
		담당자	수사관	이석호 (02-3480-2855)
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과장	강태영 (02-3150-2037)
		담당자	계장	유지훈 (02-3150-2763)
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장	이행정 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장	최승록 (02-3145-8129)

□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장	김성훈 (044-200-2082)
		담당자	사무관	이승훈 (044-200-2083)
	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	책임자	과장	노현서 (02-2100-6161)
		담당자	사무관	강동근 (02-2100-6162)
	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	책임자	과장	함영욱 (02-3150-1605)
		담당자	계장	임윤상 (02-3150-0235)

